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및 정보게시 가이드라인

2026. 8.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요양보험제도과, ’08.6.18)’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됨

목 차

I. 개요	1
○ 목적	1
○ 관련 근거	1
○ 용어 정의	1
II.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2
○ 사전 설명 및 동의를 위한 ‘비급여 표준 안내’	2
III. 비급여 정보게시 기준	2
○ 게시 항목	2
○ 게시 항목별 기준	3
○ 게시 방법	4
IV. 전산 등록 방법	4
○ 등록 경로	4
○ 등록 방법	4
V. 다빈도 질의	8
[참고]	
1. 비급여 관련 법령	13
2. 정보게시 관련 법령	14
3. 비급여 관련 지침	17
4.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서식	21

I | 개요

□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와 정확한 '비급여 정보 게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비급여 선택·결정권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하고 적절한 비급여 운영을 유도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요양보험제도과, '08.6.18.)

□ 용어 정의

- (장기요양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동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뜻함
- (장기요양 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 급여의 범위 등)에 따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뜻함

* 「보건복지부 행정지침」 ‘비급여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08.6.18.)’

II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 사전 설명 및 동의를 위한 ‘비급여 표준 안내’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3항에 계약 체결 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에 대해 설명 후 동의서 징구토록 규정
 - 수급자 상태 변화나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 중단·변경 절차 안내
- (안내 절차) 입소(이용) 계약 전 설명 후 동의서 징구
- (안내 내용) 비급여 항목·종류(구체적 설명), 종류별 비용(단가, 월 총액), 종류별 동의·거부 여부 표시 등 ‘사전설명서 및 동의서’ 표준화
- (표준 서식) 붙임 서식(2종) 활용
 -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시설급여용,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용)

III 비급여 정보게시 기준

□ 게시 항목

- (비급여 항목 및 종류)
 - 식사재료비: 일반식, 유동식(죽, 미음), 경관영양 유동식, 맞춤식(당뇨식 등), 간식비
 -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2인실, 특별실(격리실, 임종실 등)
 - 이·미용비: 커트, 파마, 염색, 그 외 기타

- (급식운영방식) 직접(자체)조리, 급식위탁(전량)
- (산출비용) 단가, 식/회, 1일 금액, 월(30일) 금액, 기관 비급여 총액
- (비고) 비용 받지 않는 경우*, 0원 입력하고 미수납 사유 작성

*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이·미용비 등

□ 게시 항목별 기준

① 식사재료비

- 입소시설 또는 단기·주야간보호 시설에서 식사 제공을 위해 실제 식사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식사 준비에 필요한 인건비, 조리 관련 관리운영비 등은 제외

- 모든 식사 종류(일반식, 유동식, 경관영양 유동식, 맞춤식 등)를 포함함
- 식사 이외의 간식비(두유, 요거트 등)포함
- 경관영양에 따른 튜브 등의 재료비, 간호사 행위료는 제외
- 전량 위탁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 고려하여 기관에서 결정하되, 그 비용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상급침실 이용료)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특별실(임종실, 격리실 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하여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③ 이·미용비

- 일상적인 용모 손질 외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받는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 비용

- 시설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제공 시 제외
- 손·발톱 정리 등 일상 용모손질은 제외

□ 게시 방법

- (게시 경로) 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공인인증)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화면(비급여항목)

- (게시 주기) 홈페이지 회원가입 즉시, 변경사항 발생 즉시 업데이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에 의거, 홈페이지 외
장기요양기관 내 게시판 등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게시하여야 함

IV 전산 등록 방법

□ 등록 경로

< 장기요양기관정보[비급여 항목] 등록 >

기관회원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것입니다.

정보게시현황

항목보기

기본정보 | 정원·현원 | **비급여항목** | 프로그램운영 | 기타 준수사항 | CCTV 설치 현황 | 사진 | 공지사항 | 게시판

□ 등록 방법

① ‘기관유형(급여종류)’ 선택

기관유형(급여종류) A03:노인요양시설(개정법)

② ‘신규’ 선택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2026/05/14 10:39 0050494 <노인>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것입니다. 정보게시현황 항목보기

기본정보 | 정원·현원 | **비급여항목** | 프로그램운영 | 기타 준수사항 | CCTV 설치 현황 | 사진 | 공지사항 | 게시판

기관유형(급여종류) A03:노인요양시설(개정법) 신규 | 저장 | 삭제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이용료(시설급여기관만 해당) ☐ 이미용비

비급여항목	종류	급식 영양분석	산출비용			비고	등록일
			단가	일	월		

③ ‘비급여항목’ 선택(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④ 비급여항목에 따른 ‘종류’ 선택

- 식사재료비: 일반식, 유동식(죽, 미음), 경관영양 유동식, 맞춤식(당뇨식 등), 간식비
-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2인실, 특별실(격리실, 임종실 등)
- 이미용비: 커트, 파마, 염색, 그 외 기타

⑤ ‘급식운영방식’ 선택(비급여항목 중 식사재료비만 해당)

- 직접(자체)조리: 전량 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자체)조리 선택
- 급식위탁(전량)

⑥ ‘저장’ 선택

0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2026/05/14 13:48 0060494

요양지원>장기요양기관 관리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제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4조 동별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함 것입니다.

정보제시현황

기초정보 | 정원·현원 | **비급여항목** | 프로그램운영 | 기타 준수사항 | CCTV 설치 현황 | 사진 | 공지사항 | 게시판

기관유형(급여종류)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이용료(상급급여기관만 해당) ☐ 이마용비

신규 저장 삭제

비급여항목	종류	급식 운영방식	산출비용			비고	이동
			단가	일	월		

[비급여 항목별 전산 등록 방법]

① 식사재료비

- ▶ 산출비용: 1식당 단가 × 1일당 N식 입력
- ▶ 1일, 월(30일) 금액: 단가, 식/일 입력 후 엔터 누르면 자동 계산됨
- ▶ 비고: 특이사항 등 입력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 | 종류: 일반식 | 급식운영방식: 직접(자체)조리

산출비용: 단가 0 원 X 0 식/일 | 1일 금액 | 월(30일) 금액

비고: ※ 제공하고 있으나 비용 받지 않는 경우 0원 입력하고 미수납 사유 비고란 작성

② 상급침실이용료: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산출비용: 1일당 단가 입력
- ▶ 월(30일) 금액: 단가 입력한 후 엔터 누르면 자동 계산됨
- ▶ 비고: 특이사항 등 입력

비급여항목: 상급침실이용료 | 종류: 1인실 | 급식운영방식:

산출비용: 단가 0 원 | 1일 금액 | 월(30일) 금액

비고: ※ 제공하고 있으나 비용 받지 않는 경우 0원 입력하고 미수납 사유 비고란 작성

③ 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따라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은 비용

- ▶ 산출비용: 1회당 단가 × 1개월당 N회 입력
- ▶ 월(30일) 금액: 단가와 회/월 입력 후 엔터 누르면 자동 계산됨
- ▶ 비고: 특이사항 등 입력

비급여항목	이미용비		종류	커트		급식운영방식	
산출비용	단가	회		원 X	회/월	1일 금액	월(30일) 금액
비고	※ 그 외 기타 및 제공하고 있으나 비용 받지 않는 경우 0원 입력하고 비고란 작성 						

Q-1

비급여인 식사재료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 제3의2호, 동법 제67조(벌칙)제2항제3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식사재료비 면제 또는 감경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6항에 따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 소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유동식 주입에 필요한 경관영양튜브와 경관영양백을 비급여로 수납할 수 있나요?

- ☞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서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나,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사 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이나, 식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식사 재료비란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용(완제품 포함)으로 볼 수 있고, 경관유동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튜브와 경관영양백은 식사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수납은 불가합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 1) 식사재료비

Q-3

일반실(3인실 등)을 이용하던 수급자가 임종을 앞두고 보호자의 선택·동의에 따라 특별실(임종실·격리실)로 이동하였을 때, 이를 비급여 항목인 '상급침실 이용료'로 수납할 수 있나요?

☞ 일반실과 구분된 독자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임종실·격리실 등의 **특별실**은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1~2인실 **상급침실의 범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특별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때,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으로만 공간이 구분된 곳은 상급침실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특별실 이용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른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서식의 비급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2)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2) 상급침실 이용료

Q-4

침대가 있는 3인실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온돌방'으로 리모델링하여 수급자의 선택·동의하에 '온돌방-3인실'을 제공한다면 비급여 항목인 '상급침실 이용료'로 수납가능한가요?

☞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급침실 이용료**'는 '**1인실 또는 2인실**'이 기준이므로 일반실과 형태가 다른 온돌방-3인실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침실 이용료'를 별도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2) 상급침실 이용료

Q-5

노인요양시설(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저귀 외,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다른 종류의 기저귀를 요청하여 제공하였다면 비급여인가요?

☞ 비급여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노인요양시설(또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기저귀 비용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노인요양시설(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기저귀가 아닌 개별적으로 기저귀 또는 요실금팬티, 특수 제작형태의 기저귀 등을 요청한다면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써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의 구입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므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실제 비용(실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이 아닌 노인요양시설(또는 공동생활가정) 자체 판단에 따라 선택 결정하여 사용하는 기저귀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급여서비스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을 수급자에게 수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기본원칙

Q-6

노인요양시설(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 대소변 양이 많거나 실수가 잦아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양의 기저귀나 물티슈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호자에게 추가 구입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비급여 수납이 가능한가요?

☞ 노인요양시설(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기저귀, 물티슈)임에도 단지 다른 수급자들에 비해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별도 비용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2) 세부 항목별 기준/ 4)

Q-7

외출 또는 병원진료가 필요한 수급자가 보호자의 사정으로 병원진료를 데려가지 못하고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 유류비 등을 비급여에 포함시켜 수급자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의 비용 수납은 불가합니다.

- 다만, 수급자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 외출을 하고자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실비에 한하여 별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의 병원방문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비급여로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2) 세부 항목별 기준/ 3)

Q-8

시설에서 욕창 치료에 사용되는 처치재료비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욕창 치료 시 사용하는 습윤 드레싱 제품 등 처치재료의 사용량이 다른 수급자에 비해 많아 보호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구입해 오도록 할 경우 비급여로 수납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수가는 포괄수가제로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욕창 치료에 포함되는 비용은 간호사의 행위료와 처치에 필요한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료비를 비급여로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또한, 단지 다른 수급자에 비해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구입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2) 세부 항목별 기준/ 6)

Q-9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선 구매 후 비급여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설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일상용품 이외 수급자가 별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실비를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 비급여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첫 번째 사례와 같이 **기관의 판단에 따라 물품을 선구매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수급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이 불가합니다.
- 다만,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2) 세부 항목별 기준/ 4)

Q-10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에 입소 직전(또는 입소 중) 수급자에게 휠체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또는 대여)해 오도록 안내해도 되나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제1호에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급여 포함)'는 재가급여 종류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제1항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입소)하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한편, 법 제23조에서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의 **비품을 갖추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이에 시설 입소 직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에게 침대,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수급자가 기존에 재가급여 이용 시 사용한 복지용구를 단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여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행정지침 3. 기타사항/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삭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1., 2019. 6. 12.>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제69조(과태료)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17.,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20. 3. 31., 2024. 1. 2.>
 1. 삭제 <2013. 8. 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 8. 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3. 8. 13., 2021.
12. 21.> [시행일: 2024. 7. 3.] 제69조

□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요양보험제도와, 08.6.18.)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예)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

(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2) 상급침실 이용료

가.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

* 예) 일반실 이용 비용이 월 150만원(수가+기타 비급여 비용)이고 1인실 이용 총비용이 월 170만원인 경우 그 차액(20만원)에 대해 비급여 비용으로 수납함

나. 상급침실은 (ㄱ)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ㄴ)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ㄷ)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함

*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은 불가함

3) 이·미용비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

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 항목별 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수급자의 자비 부담)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자비 부담)
- *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비용 등

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2)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 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나.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6) 기타 비용

가.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나. 방문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제공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별도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음

3. 기타사항

1)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수납 가능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2)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실시함

3)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됨

-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함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시설급여)

- 본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3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시 수급자(또는 보호자) 희망에 따라 선택·제공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표준 안내서입니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임
-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실제소요비용(실비)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2)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맞춤형, 간식비도 식사 재료비의 일종임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해야 함

(3) 이·미용비: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장기요양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
(예시) ① 수급자 기저귀 비용(주·야간보호에 한함)

② 원거리 외출 교통 비용

③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일상용품 구입 비용

④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

1. 비급여 대상 항목 및 비용(해당란에 √ 표시)

항목	종류	단가	선택	동의여부	
				동의	거부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수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았습니다.				☐	☐
식사재료비	일반식		☐	☐	☐
	유동식(죽, 미음)		☐		
	경관영양유동식		☐		
	맞춤식(당뇨식 등)		☐		
	간식비		☐		
상급 침실 이용료	1인실		☐	☐	☐
	2인실		☐		
	특별실(격리실, 임종실 등)		☐		
이·미용비	커트		☐	☐	☐
	파마		☐		
	염색		☐		
	그 외 기타		☐		

※ 식사재료비의 경우, 갑작스런 수급자 상태 변화 등에 따라 종류 변경 가능(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함)

2. 기타 실비 항목 및 종류(해당란에 √ 표시)

항목	종류	동의여부	
		동의	거부
기타 실비 항목 및 수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았습니다.		☐	☐
원거리 외출 교통 비용	원거리 병원 등 외출 시 발생하는 실비	☐	☐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일상용품 구입비용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	☐	☐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비용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수급자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	☐	☐

3. 최종 확인 및 동의

-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으며, 본인이 동의한 항목에 대해 비용이 청구됨을 이해하였습니다.
- 동의한 항목이라도 수급자의 상태 변화나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을 중단·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 본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3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 희망에 따라 선택·제공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표준 안내서입니다.

< (안내)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임
-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실제소요비용(실비)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2)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맞춤식, 간식비도 식사 재료비의 일종임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2) **이·미용비**: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장기요양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

(예시) ① 수급자 기저귀 비용(주·야간보호에 한함)

② 원거리 외출 교통 비용

③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일상용품 구입 비용

④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

1. 비급여 항목 및 비용(해당란에 √ 표시)

항목	종류	단가	선택	동의여부	
				동의	거부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및 수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았습니다.				☐	☐
식사재료비	일반식		☐	☐	☐
	유동식(죽, 미음)		☐		
	경관영양 유동식		☐		
	맞춤식(당뇨식 등)		☐		
	간식비		☐		
이·미용비	커트		☐	☐	☐
	파마		☐		
	염색		☐		
	그 외 기타		☐		

※ 식사재료비의 경우, 갑작스런 수급자 상태 변화 등에 따라 종류 변경 가능(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함)

2. 기타 실비 항목 및 종류(해당란에 √ 표시)

항목	종류	동의여부	
		동의	거부
기타 실비 항목 및 수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았습니다.		☐	☐
수급자 기저귀 비용 (주·야간보호에 한함)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수급자가 원할 경우 직접 구입한 기저귀 이용 가능(수급자 자비 부담)	☐	☐
원거리 외출 교통 비용	원거리 병원 등 외출 시 발생하는 실비	☐	☐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일상용품 구입비용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 (물품·용역: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 식품 등)	☐	☐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비용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수급자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명:)	☐	☐

3. 최종 확인 및 동의

-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으며, 본인이 동의한 항목에 대해 비용이 청구됨을 이해하였습니다.
- 동의한 항목이라도 수급자의 상태 변화나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을 중단·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